#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소송 중 원금 일부를 받았다면

가상 작성 예시 · 법원 공식 서식이나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예시는 제1심 대여금 소송에서 원금만 청구했고, 소송 중 원금 일부를 실제로 지급받아 청구액을 줄이는 한 경우입니다. 이자·지연손해금은 변경 전후 모두 청구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이자·비용이 있는 사건의 변제충당이나 청구 확대에는 이 문장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 먼저 확인할 판단

원금 10,000,000원 중 4,000,000원을 변제받아 원금 6,000,000원만 남은 것이 사실이라면, 변경 전후 청구취지와 그 이유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다만 같은 청구권의 청구금액 감축은 소 일부취하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이미 본안에 응소했는지, 감축 서면의 송달과 동의·이의 절차가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www.law.go.kr) 및 제266조 (www.law.go.kr), 대법원 2005다19477 (www.law.go.kr).

## 가상 사건의 전제

- 원고(가상 인물): 김가람 / 피고(가상 인물): 이다온.
- 제1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원금 10,000,000원을 청구했다고 가정합니다. 종전 소장의 원금 외 이자·지연손해금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 문구는 실제 소장과 진행 단계에 따라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 피고가 소송 계속 중인 2026-09-20에 4,000,000원을 원금 일부 변제로 지급했고, 당사자 사이에 그 성격에 다툼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통장 입금만으로 그 법적 성격이 언제나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사건번호·법원·주소·연락처와 상세 개인정보는 공개 예시에 쓰지 않습니다.

## 변경 전후를 나란히 적는 예시

| 항목 | 종전 소장 청구취지 | 감축 후 청구취지 |
|---|---|---|
| **원금 지급**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라. |
| **소송비용** | 실제 종전 소장 문구 확인 | 일부취하의 효력과 사건 진행을 확인해 비용 문구를 따로 정리 |

표는 원금 부분의 비교입니다. 실제로는 현재 기록에 남은 종전 청구취지 전체와 변경 후 전체 문구를 대조해야 합니다. 감축된 4,000,000원에 관한 일부취하의 효력과 소송비용 부담은 진행 단계·상대방 대응·남은 청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중립적 비용 문구도 법원이 정할 결과를 미리 확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 문서에 적을 본문 예시

제목: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청구금액 감축)

사건: 실제 사건번호·사건명·계속 중인 법원을 기재

원고: 김가람 / 피고: 이다온 (모두 가상 인물)

신청 내용: 원고는 종전 청구취지 중 원금 지급을 구하는 금액을 아래와 같이 감축합니다.

변경 후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의 부담은 법원이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이유: 피고는 소송 계속 중인 2026-09-20 원고에게 원금 일부 변제로 4,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종전 청구 원금 10,000,000원에서 이를 공제한 6,000,000원을 청구합니다. 송금내역과 지급 명목을 확인할 자료를 첨부합니다.

작성일·제출법원·원고 서명 또는 날인은 실제 제출 시점과 사건 기록에 맞춰 적습니다. 법원·전자소송 포털의 현재 제출 방식이나 재판부의 보정 요구가 있으면 그에 맞춥니다.

## 감축 전 반드시 대조할 자료

| 확인할 점 | 준비하거나 확인할 자료 |
|---|---|
| **종전 청구의 정확한 범위** | 소장과 이전 청구변경 서면, 소송기록상 최종 청구취지 |
| **4,000,000원의 지급일·지급자·명목** | 입금내역, 송금 메모, 당사자 문자·영수증·합의 내용 |
| **이자·비용·상계·다른 변제** | 계약서·정산표·상대방 주장. 본 예시의 원금 충당 가정이 맞지 않으면 잔액을 다시 계산 |
| **상대방의 본안 대응과 동의** | 답변서·준비서면·기일조서, 변경/취하 서면의 송달 기록과 상대방 동의·이의 |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동일 청구권의 금액 일부 감축이 소 일부취하로 해석되는 경우,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한 뒤라면 그 효력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하 서면 송달 후 2주 이내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접수 즉시 감축 효력이 확정됐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일부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면 감축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가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본안 종국판결 뒤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같은 소의 재제기가 제한되므로 사건 단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www.law.go.kr). 금액을 줄이면서 청구원인까지 달라지는 사건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예시의 제1심 사건에 맞는 법원 공식 양식의 내부 필드를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양식 목록 79쪽 (www.scourt.go.kr)에서 확인되는 민사 양식은 항소심용이므로, 이를 제1심 공식 양식으로 오인하거나 그대로 복제하지 마세요. 자세한 판단과 다른 유형의 청구변경은 관련 공개 글 (ianlaw.co.kr)을 보세요.